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466
번호	

제출년월일 : 1998. 3. 13.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공립보육 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신규임용 연령및 임기제한 규정을 두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시설장은 만61세, 기타 종사자는 만58세까지로 규정함(안 제12조의2)
-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및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의3)
-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무기간에 따라 종전에는 3일 내지 20일까지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4일 내지 23일까지로 함 (안 제14조 제1호)

3. 본문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취원"을 "입소"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제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때의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원장) : 만61세
2. 기타종사자 : 만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신규임용 연령및 임기제한) ①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대한 연령및임기제한으로 보육시설간의 균형유지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제한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원장) : 40세이상 ~ 55세이하
2. 기타종사자 : 20세이상 ~ 40세이하

②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14조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4 일
· 6월이상 1년미만	7 일
·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 6년이상	23 일

제15조중 "보육위원회"를 "고성군보육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3호중 "평"을 "m"로 하고, 동서식 제7조 제5호중 "갑"을 "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의 근무기한은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 제4조 (생략)</p> <p>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u>취원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 (생략) <신설></p> <p>2. ~ 4. (생략)</p> <p>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u>보건사회부장관</u>이 정한 <u>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u>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u></p> <p>제7조(위탁운영) ① (생략) ②<u>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u>입소</u>.....</p> <p>1. (현행과 같음)</p> <p>2. <u>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u></p> <p>3.~5.(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p> <p>제6조(보육료) <u>보건복지부장관</u></p> <p>제7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u>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2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p> <p><u><신설></u></p> <p>③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12조(종사자 임면) ①..... 시설장</p> <p><u>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때의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p> <p>1. 시설장(원장) : 만61세 2. 기타종사자 : 만58세</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제12조의3(신규임용연령및 임기제한) 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신규임용에 대한 연령및 임기제한으로 보육시설간의 균형유지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사자별 신규임용 연령제한은 다음과 같다.</p> <p><u>1.시설장(원장):40세이상~55세이하</u></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휴가) <u>종사원</u>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1.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 속 기 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 <tr><td>· 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 1년이상 2년미만</td><td>8일</td></tr> <tr><td>· 2년이상 3년미만</td><td>11일</td></tr> <tr><td>· 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 <tr><td>· 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 <tr><td>· 5년이상</td><td>20일</td></tr> </tbody>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3일	· 6월이상 1년미만	7일	· 1년이상 2년미만	8일	· 2년이상 3년미만	11일	· 3년이상 4년미만	14일	· 4년이상 5년미만	17일	· 5년이상	20일	<p>2. 기타종사자 : 20세이상~40세이하</p> <p>② 시설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p> <p>제14조(휴가) <u>종사자</u>.....</p> <p>.....</p> <p>1.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 속 기 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3월이상 6월미만</td><td>4일</td></tr> <tr><td>· 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 1년이상 2년미만</td><td>10일</td></tr> <tr><td>· 2년이상 3년미만</td><td>13일</td></tr> <tr><td>· 3년이상 4년미만</td><td>16일</td></tr> <tr><td>· 4년이상 5년미만</td><td>19일</td></tr> <tr><td>· 5년이상 6년미만</td><td>22일</td></tr> <tr><td>· 6년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4일	· 6월이상 1년미만	7일	· 1년이상 2년미만	10일	· 2년이상 3년미만	13일	· 3년이상 4년미만	16일	· 4년이상 5년미만	19일	· 5년이상 6년미만	22일	· 6년이상	23일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3일																																					
· 6월이상 1년미만	7일																																					
· 1년이상 2년미만	8일																																					
· 2년이상 3년미만	11일																																					
· 3년이상 4년미만	14일																																					
· 4년이상 5년미만	17일																																					
· 5년이상	20일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4일																																					
· 6월이상 1년미만	7일																																					
· 1년이상 2년미만	10일																																					
· 2년이상 3년미만	13일																																					
· 3년이상 4년미만	16일																																					
· 4년이상 5년미만	19일																																					
· 5년이상 6년미만	22일																																					
· 6년이상	23일																																					
<p>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u>보육위원회</u>가 이를 담당한다.</p>		<p>제15조(징계위원회)</p> <p>..... <u>고성군보육위원회</u>.....</p> <p>.....</p>																																				
<p>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p> <p>1. <u>원장</u> — 군수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u>원장</u>인 경우에는 군수)</p> <p>2. (생략)</p>		<p>제16조(징계권자)</p> <p>... 1. <u>시설장</u> —(.....<u>시설장</u>.....)</p> <p>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복지부의 <u>사업지침</u>에 의한다.</p>		<p>제18조(준용규정)</p> <p>.....<u>보육사업지침</u>..</p> <p>.....</p>																																				

